

예산총칙

제1조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·기타특별회계 세입·세출예산 총액 및 회계별 일시 차입할 수 있는 최고액은 다음과 같다.

(단위 : 천원)

구 분		세입·세출예산총액	일시차입한도액
합 계		7,776,955,136	233,308,654
일반 회 계		6,397,560,440	191,926,813
특별 회 계		1,379,394,696	41,381,841
공 기 업 특 별 회 계	공 기 업 특 별 회 계	287,852,599	8,635,578
	① 상 수 도 사 업	137,189,668	4,115,690
	② 하 수 도 사 업	150,662,931	4,519,888
	기 타 특 별 회 계	1,091,542,097	32,746,263
	① 의 료 급 여 기 금	466,536,065	13,996,082
	② 수 질 개 선	3,520,136	105,604
	③ 풍 영 정 천 유 지 용 수 공 급 사 업	341,495	10,245
	④ 하 남 3 지 구 도 시 개 발	3,060,924	91,828
	⑤ 택 지 개 발 사 업	63,035	1,891
	⑥ 교 통 사 업	32,196,281	965,888
	⑦ 광 역 교 통 시 설	5,422,703	162,681
	⑧ 학 교 용 지 부 담 금	6,983,545	209,506
	⑨ 산 업 단 지	3,981,748	119,452
	⑩ 중 소 기 업 육 성 기 금	75,809,410	2,274,282
	⑪ 도 시 철 도 사 업	280,746,254	8,422,388
	⑫ 소 방	212,880,501	6,386,415

제2조 세입·세출예산의 명세는 별첨“세입·세출예산”과 같다.

제3조 채무부담행위사업은“해당 없음”

제4조 계속비사업은 “해당 없음”

제5조 명시이월사업은“해당 없음”

제6조 일반회계 예비비는“11,870,235천원”으로 한다.

제7조 일반 및 특별회계(공기업특별회계 포함) 지방채발행액은“548,800,000천원(고금리지방채 차환 266,800,000천원 포함)”으로 한다.

지방채차입한도액(기본한도)은“233,308,654천원”으로 한다.

제8조 지방재정법 제47조의2 제1항 단서규정에 의한 기준인건비에 포함된 경비는 상호간 또는 타 비목에서 이용할 수 있다.